##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4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장경태・임호선・홍성국

정청래 · 한준호 · 김남국

이원택 · 이수진 · 이성만

임오경 · 김병주 · 이용우

최혜영 · 장철민 · 김민철

오영환 · 주철현 · 신현영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조제 12호, 제14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###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2호 중 "대합실"을 "대기실"로 한다. 제14조제1항제2호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	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
다.	다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"환승시설"이란 육상・해상	12
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	
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	
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	
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	
장, 공항여객터미널, 항만 <u>대합</u>	
<u>실</u> , 철도역, 도시철도역, 버스	<u>실</u>
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	
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	
설을 말한다.	
13. ~ 18. (생 략)	13. ~ 18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	제14조(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
교통조사) ① (생 략)	교통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<u>지불</u>	2 <u>지급</u>
• 결제하는 카드, 그 밖의 매	
체(이하"교통카드"라 한다)	
3. ~ 4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